

韩国专利法新旧对比 (2024.2.20 修订版与 2025.1.21 修订版)

특허법	특허법
[시행 2024. 8. 21] [법률 제 20322 호, 2024. 2. 20, 일부개정]	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700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
제 2 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2. (생 략)	1.2. (현행과 같음)
3. “실시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	3. “실시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	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	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

<p>제 89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)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 88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 89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)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 88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(제 92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)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90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) ① ~ ⑥ (생략)</p>	<p>제 90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,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.</p>

<p><신 설></p>	<p>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 7 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기,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.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
<p>제 91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) 심사관은 제 90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 91 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) 심사관은 제 90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
<p>1.2. (생 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 89 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	<p>3.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 89 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
<p>4.5. (생 략)</p>	<p>4.5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6. 제 90 조제 7 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</p>
<p>제 93 조(준용규정)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 57 조제 1 항, 제 63 조, 제 67 조, 제 148 조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같은 조 제 7 호를 준용한다.</p> <p><후단 신설></p>	<p>제 93 조(준용규정)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 57 조제 1 항, 제 63 조, 제 67 조, 제 78 조제 1 항·제 3 항, 제 148 조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같은 조 제 7 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 78 조제 1</p>

	<p>항 중 “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”은 “제 92 조의 4 및 제 92 조의 5 에 따른 연장등록거절 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”으로, “그 심사절차”는 “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”로 본다.</p>
<p>제 127 조(침해로 보는 행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 127 조(침해로 보는 행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</p>
<p>1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: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	<p>1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: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
<p>2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: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	<p>2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: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
<p>제 134 조(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)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 92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 134 조(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)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 92 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	<p>3.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 89 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

4.5. (생략)	4.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6. 제 90 조제 7 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	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
1. 연장등록이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: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	1. 연장등록이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: 제 89 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⑤ 연장등록이 제 1 항제 6 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제 181 조(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	제 181 조(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.	②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	2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
3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	3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
<신설>	제 229 조의 3(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)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p>제 230 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 조제 1 항, 제 228 조 또는 제 229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 230 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 조제 1 항, 제 228 조, 제 229 조 또는 제 229 조의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1.2. (생략)</p>	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3. 제 229 조의 3의 경우: 1억원 이하의 벌금</p>

韩国专利法新旧对比 (2025.1.21 修订版与 2025.5.27 修订版)

특허법	특허법
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 20700 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	[시행 2025. 5. 27] [법률 제 20975 호, 2025. 5. 27, 일부개정]
<p>제 126 조의 2(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26 조의 2(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제시 의무)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
<p>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③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 132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 132 조제 3 항 중 “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를 “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로 한다.</p>	<p>③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 132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 132 조제 3 항 중 “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를 “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”로 한다.</p>

<p>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	<p>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
---	---